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본 해설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서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0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06 1.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 10 2.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 11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 12 4.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

02 원료·제조물 정의

- 16 1. 원료·제조물의 의미
 - 17 2. 원료·제조물의 범위
-

03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21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23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 24 3.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25 4.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0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28 1.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 29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 29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징후발생 시 대응 업무
 - 30 3)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2022년 1월 27일 고시 예정, 행정예고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 32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 32 1)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를 위한 예산
 - 34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예산
 - 35 3)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2022년 1월 27일 고시 예정, 행정예고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 36 3.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 37 1)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 39 2)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신고 및 조치 업무처리절차
 - 44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신고 및 조치
-

05 Q&A

- 48 질의응답 사례
-

06 참고(관계 법령상 규정)

- 70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
-

0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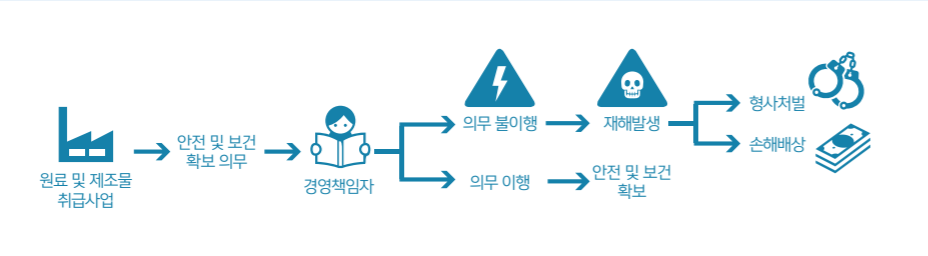
1.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2.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4.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1.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결과 중 하나를 야기한 경우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법 제10조)



* 사고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며(법 제10조 및 제11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됨(제15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함

중대시민재해의 범위

【중대산업재해의 제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면서,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중대산업재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북 “05.Q&A”를 참고

【장소적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

【중대시민재해 사례】

아래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한 사례로서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를 가정하여 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음

중대시민재해 사례 예시

구 분	내 용
사건명(1)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압변류기 내부에서 가열된 절연유가 쏟아져 甲과 乙을 덮쳐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甲은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폐부전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를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년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제조사의 사업장이 아닌 제조된 물건을 구입한 사업장 내에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조물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음
피해 규모	사망 1명 중화상 1명
중대재해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은 제조상의 결함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임. * (예) 유해·위험요인 점검 인력이 없었거나 있었다라도 적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인력 등이 부족했던 것을 사업주 등이 확인하거나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사건명(2)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모, 영유아 등이 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건임 - 2012년 2월 폐손상 환자 사례와 같은 조직병리 소견이 동물에서 관찰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최종확인
피해 규모	2021년 10월 31일 기준 피해 신청자 수는 총 7,598명으로 사망자는 1,724명(영유아 290명 포함)
중대재해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은 제조물의 설계상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 (예) 위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지 있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사업주 등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구 분	내 용
사건명(3)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건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9월 주식회사 00000 구미 공장에서 탱크 컨테이너에서 생산설비로 불화수소를 이송하기 위하여 밸브를 연결하는 작업 중 불화수소가 누출 ○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명의 근로자와 펌프수리업체 직원 1명이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탱크 컨테이너에서 계속 누출된 불화수소는 인근 사업장과 지역주민, 사고를 수습하던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망 5명, 입원치료 12명, 건강검진 7,162명, 농작물 237.9ha, 가축 3,209두, 차량 1,138대 등의 피해 발생
피해 규모	사망 5명, 중상해 12명, 경상해 7162명 * 주민: 병원진료 7,162건
중대재해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은 원료의 관리상 결함이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 (예) 위와 같은 관리상의 결함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사업주 등은 점검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건명(4)	거제 백병원 집단환자 발생사건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10월 00제약 근이완제 ‘갈라민주’를 맞고 1명 사망 등 집단 쇼크사고를 일으킨 사건 ○ 식약처의 조사결과 00제약 근육이완제 갈라민주(H005)에서 혐기성인 “엔테로박터크로아케”균과 호기성인 “코리넨박테리움세로시스”균, “바실루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00제약 주사제 멸균기 등 생산설비가 전반적으로 노후했으며 제조관리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조지시서의 임의 발행, 생산담당자의 공정 불량품을 재생하는 등 GMP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인위적 사고라고 밝혔음 - 8개월 동안 제조관리역사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 품목 생산 중단조치를 내림
중대재해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와 같은 제조물의 제조상 결함이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 (예) 위와 같은 제조상 결함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 (인력배치 요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사업주 등은 점검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들의 범위

1) 책임의 주체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법 제2조 제8호)를 말하며 이때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보다 넓은 개념임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법 제2조 제9호 가목)으로서 통상적인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를 의미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 포함)

2)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 2022. 1. 27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2024. 1. 27부터(법 부칙 제1조 제1항)

【주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적용 예외가 없음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안전·보건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들은 형사처벌됨(법 제10조).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1) 민사책임의 가중 : 징벌적 손해배상 (5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들은 중대시민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법 제15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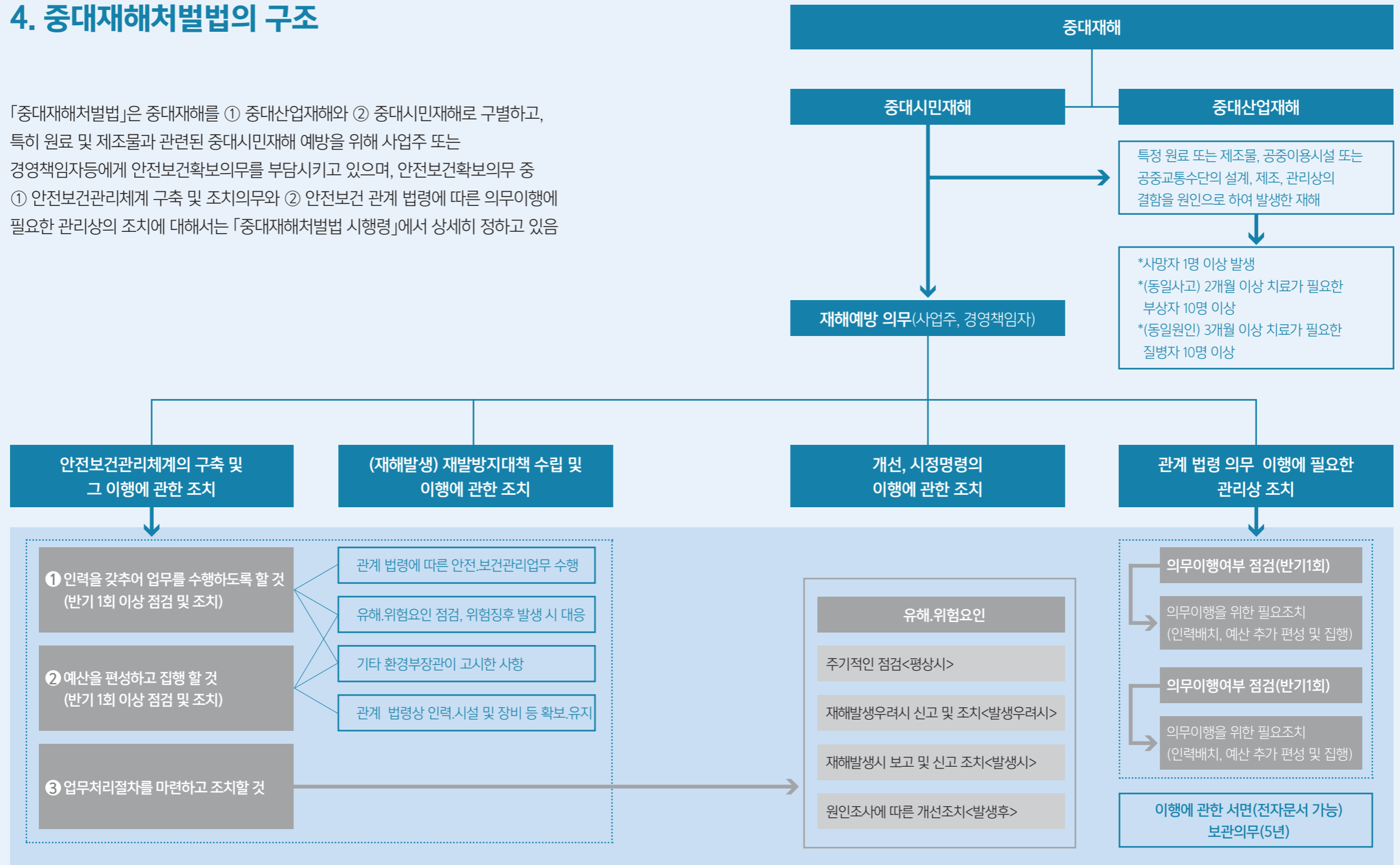
2) 양벌규정 : 경영책임자등 외 법인 또는 기관도 처벌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법 제11조)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50억 이하 벌금
- 기타 중대시민재해 : 10억 이하 벌금

4.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① 중대산업재해와 ② 중대시민재해로 구별하고, 특히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의무와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음



02

원료·제조물 정의



1. 원료·제조물의 의미
2. 원료·제조물의 범위

1. 원료·제조물의 의미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임

원료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제조에 투입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라는 의미로 사용됨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도 포함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조물은 원재료에 설계·가공 등의 행위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 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

2. 원료·제조물의 범위

1) 모든 원료·제조물

그 범위를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원료·제조물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물의 속성상 인체유해성이 없는 경우(승강기, 자동차 등)도 있으나, 이러한 것도 관리상 결함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이 존재하므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나아가 상식적으로 본래 해롭지 않은 원료·제조물이라도 결과적으로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인체 유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2)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제조물이 적용대상이 됨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은 원료 및 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재난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03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3.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경영책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함. 아래 서식으로 그 이행 여부를 쉽게 점검·확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
양식은 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아래 양식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이용 가능함.
다만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13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예시)

이행사항	점검					
	상반기			하반기		
	점검 일시	점검 결과	조치 사항	점검 일시	점검 결과	조치 사항
인력배치 업무부여	① 시설·설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② 유해물질 취급 안전관리 업무 ③ 품질검사 및 제품 안전관리 업무 ④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징후 발생시 대응업무	인력점검/ 업무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인력배치 업무분배 (문서화)		좌동	좌동
예산 편성 및 집행	① 안전관리 업무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예산 ② 시설·설비 확보 유지를 위한 예산 ③ 품질·기술기준 수준 유지를 위한 예산 ④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징후 발생시 대응업무를 위한 예산	예산편성· 집행점검/ 필요시 개선사항도출 (문서화)	예산편성 예산집행 (문서화)		좌동	좌동
업무처리 절차의 마련 (별표5 한정)	①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결과 신고 및 조치의무 ③ 재해발생시 보고, 신고 및 조치의무 ④ 재해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업무처리 절차점검/ 필요시 개선사항도출 (문서화)	업무처리 절차 마련/ 개선 (문서화)		좌동	좌동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① 의무이행 사항 점검 ② 미이행시 조치	미이행 확인/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예산추가 편성· 집행/ 인력배치 (문서화)		좌동	좌동
법령상 교육 실시 점검	① 교육 실시 점검 ② 미이행시 조치	교육점검/ 필요시 개선사항 도출 (문서화)	이행지시 예산확보 (문서화)		좌동	좌동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경영책임자들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인력의 확보·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및 대응 등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할 것”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본 가이드북 “04.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참고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아래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

-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에 적용될 것
-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과 관련된 것
- 위의 유해·위험 요인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것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

① 산업안전보건법	①⑦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② 원자력안전법	①⑧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③ 약사법	①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②⑩ 승강기 안전관리법
⑤ 화장품법	②⑪ 위험물안전관리법
⑥ 농약관리법	②⑫ 해사안전법
⑦ 비료관리법	②⑬ 지하수법
⑧ 사료관리법	②⑭ 수도법
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②⑮ 먹는물관리법
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②⑯ 도시가스사업법
⑪ 의료기기법	②⑰ 선박안전법
⑫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②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⑬ 화학제품안전법	②⑲ 전기안전관리법
⑭ 식품위생법	③⑰ 자동차관리법
⑮ 화학물질관리법	③⑱ 석면안전관리법
⑯ 광산안전법	③⑲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위 목록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예시한 것으로서 열거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 9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률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포함될 수 있음.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환경부와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 본 예시는 법령해석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사후조치, 교육실시 점검 및 사후조치 의무를 부담”

※ **【점검에 따른 조치의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과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불이행 사실 발견 시 이에 대해 조치해야 함

【점검의무】 경영책임자는 사업상 취급하는 원료·제조물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령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교육실시 점검의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실시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예시

구분	내용
「약사법」상 약사, 한의사의 연수교육 (동법 제15조)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 매년 6시간 이상
「마약류관리법」상 원료물질수 출입업자들의 교육(동법 제50조)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내 1회 2시간
「화장품법」상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제조관리사의 교육(동법 제5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최초교육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내 보수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 기준 매년 1회
「농약관리법」상 제조업자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제23조 제3항)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 매년, 교육시간 6시간 이상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자 및 종업원의 교육(동법 제13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 매년, 2시간
「의료기기법」상 품질책임자 교육 (동법 제6조의2)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1년에 8시간 이상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법정 의무교육의 상세한 근거와 내용은 본 가이드북 “06.참고”에 수록되어 있음

3.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경영책임자등은 재해발생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을 위한 계획서 구성 표준안

구분	내용	상세 내용
I	사고개요	사고유형, 현황, 현장정보, 사고정보, 피해상황
II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활동 상황 문서점검, 현장조사 내용
III	사고원인 분석 및 결론	(필요시) 시험실시, 기타 자문 등을 통한 원인분석 결과 ※ 사고의 과학적 원인과 업무 절차상의 원인 모두 포함
IV	재발방지 대책	자체 방지대책, 명령에 따른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
V	향후조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계획 등

4.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경영책임자등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사항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구성 표준안

구분	내용	상세 내용
I	명령사항 확인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는가?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했는가?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후 해당 내용을 관련 담당자 등과 공유했는가?
II	이행조치계획서 마련	이행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마련했는가?
III	이행조치실시	이행계획에 따라 이행조치를 실시하였는가?
IV	이행조치결과 정리 및 보고	이행조치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하였는가?
		이행조치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한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하였는가?

04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3.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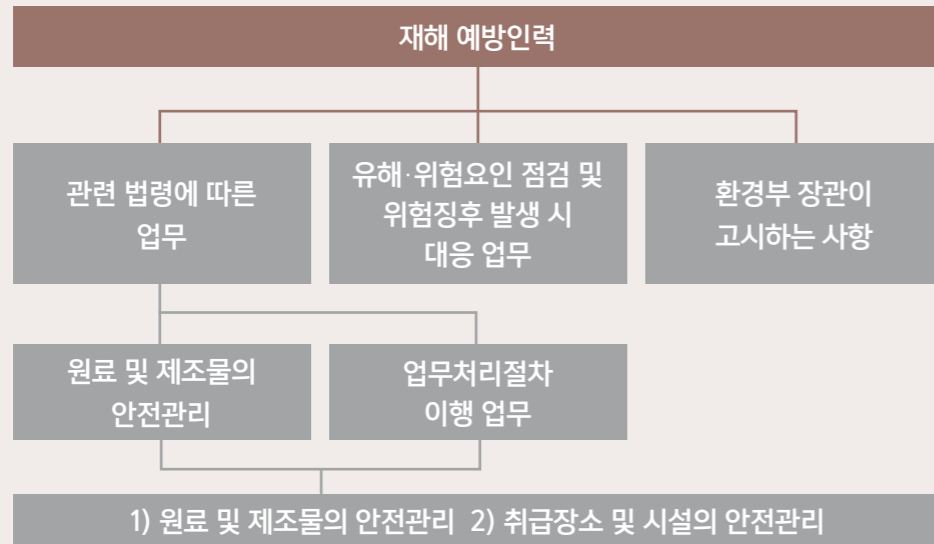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취급 하는 원료·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감소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1. 안전보건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것”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1)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련 인력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갖추고 해당 인력이 안전·보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담당자 등의 배치와 업무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북 “06. 참고”의 법령상 인력기준표 확인

- (관계 법령에 내용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안전·보건인력 배치 및 업무부여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2)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부여하는 조치를 하면 됨
- (안전·보건 업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대응, 시설 및 장비 관리, 품질관리, 안전교육, 관련 서류작성 및 보관 등이 이에 해당함

※ 반드시 새로운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안전·보건 인력의 활용도 가능하지만,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규모와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징후발생 시 대응 업무

경영책임자등은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인력의 배치와 업무부여]

-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업무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업무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을 위한 업무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등의 업무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등의 업무

※ 반드시 새로운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안전·보건 인력의 활용도 가능하지만,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규모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별 관계 법령상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사항은 이 가이드북의 “05.Q&A”를 참고

【점검 및 대응업무의 내용】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징후발생 시 대응 업무의 내용은 본 가이드북 “4.다.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중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대응방법” 참고

3)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022년 1월 27일 고시 예정, 행정예고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환경부 장관 고시(안)

제3조(인력 확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2. 원료, 제조물의 생산·제조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시험, 성능평가, 품질 검사, 안전정보 알림, 품질관리체계 운영, 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점검업무
3. 원료, 제조물의 보관·유통시 보관·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확인, 부패·변질·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점검업무

4.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 및 제조물의 파기, 수거, 판매중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의 정비, 보수, 보강 등 긴급안전조치 및 조치결과통보 업무
5.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의 기준

사업형태, 규모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시 고려사항

-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보건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배치
- 근무위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 등과 인접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시간을 확보하고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을 것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경영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2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1)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를 위한 예산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등이 확인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담함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예산은 ①인건비, ②시설·장비 확보·유지관리비, ③안전 점검 비용, ④기타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음

[관계 법령에 따른 예산편성]

- (인건비) 원료·제조물 안전관리 업무/시설·설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인력의 인건비
- (시설·장비·확보·유지관리비) 원료·제조물 취급시설 등의 안전과 정비·점검을 위한 신규 시설 및 장비 확보비용, 기존 시설 및 장비의 보수 등을 위한 비용
- (안전점검비용)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비용(위탁시 위탁비용으로 별도 기재)
- (기타비용) 재해발생 및 우려시 안전조치비, 계획수립, 안전교육, 관련 서류작성 및 보관 등의 행정비용

- (관계 법령에 내용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인력, 시설 및 장비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2)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담함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필요 예산

구분	예산
고압가스법	(제조/저장/판매) 시설/기술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수입) 시설/기술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운반) 운반차량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농약관리법	(제조/수입/판매) 시설 및 장비 요건 준수 및 유지 예산
마약류관리법	(제조/수입/판매) 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비료관리법	생산시설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화학제품안전법	(제조/수입) 제조 및 보관 시설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식품위생법	(제조/가공/운반/판매/보존) 시설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급식) 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약사법	(약국) 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제조/수입)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의료기기법	(제조/수입) 시설과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예산
화약류 단속법	(판매) 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화학물질관리법	(취급) 취급기준, 취급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운반) 운반장비 및 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예산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예산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담함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예산]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추고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비용(인건비 등)
-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대응 업무가 법정되어 있을 경우 위 예산은 “1)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를 위한 예산”과 중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을 위한 업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이 가이드북 “04.다.1)”을 참고

3)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022년 1월 27일 고시 예정, 행정예고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환경부 장관 고시(안)

제4조(예산 편성·집행)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2. 유해·위험요인의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3.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조치
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3.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경영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제4호」

-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대상

아래 특정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5]의 원료·제조물

법 률	원료 또는 제조물
고압가스법	독성가스(제28조제2항제13호)
농약관리법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
마약류관리법	마약류(제2조제1호)
비료관리법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제2조제2호 및 제3호)

법 률	원료 또는 제조물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제3조제7호 및 제8호)
식품위생법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약사법	의약품, 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제2조제4호 및 제7호, 제85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제2조제5호)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제2조제1항)
총포화약법	화약류(제2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제2조제7호)
기타	위 원료·제조물에 준하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생명·신체에 유해한 원료·제조물

소상공인 제외

소상공인*은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업무처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의무가 없는 것일 뿐 상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①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1)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별표5의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방법】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은 아래를 고려하여 진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순회점검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유해·위험요인 점검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유해·위험요인 점검절차나 방법의 예는 아래와 같음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의무(제23조의2제1항) → 자체 점검계획(안전계획내) → 안전관리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보완 및 개선 계획, 설비·장치의 안전관리 계획 및 점검계획(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고시)에 따른 이행
- 「고압가스법」 안전관리규정 작성의무(제11조) → 탱크운반,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 및 자율검사이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별표15) →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 「건강기능식품법」 자가품질검사의무(제21조) → 주기적 자가품질검사(시행규칙 별표7) / 원재료 검사 확인의무(제21조의2)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정 고시,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재료 검사 이행
- 「광산안전법」 성능검사(제9조), 안전규정제정(제11조) → 광산안전사항 점검(근로자 준수사항, 화약사용 사항, 전기기계설비 안전, 광해방지 등) 이행
- 「농약관리법」 자체검사업무(제24조제2항), 판매관리업무(제23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의 준수 의무

2)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 신고 및 조치 업무처리절차

경영책임자등은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확인결과 중대시민 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시행,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함

업무처리절차의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의 업무처리절차 표준(안) 예시를 기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업무처리절차의 마련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관계에 대한 예는 이 가이드북 “06.참고”를 참고

업무처리절차 표준(안) 예시

1. 사업장 일반현황				
상호(명칭)		업종	취급하는 원료/제조물 종류	안전보건 담당자
연락처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 사무실 등			
주소(사업장)				
2. 유해·위험요인 목록 및 안전장치				
①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목록				
② 안전장치·장비 목록 및 배치도				
3. 유해·위험요인 점검				
내용	추진일정	추진절차	예산 확보 여부	미확보시 조치계획
(점검대상/내용 등)	점검주기, 수시점검 요건 및 준비사항 등	결과보고, 피드백 절차 등		

4.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에 따른 조치	
① 내부 대응	비상 연락체계 및 비상 대응조직 상세, 신고접수 및 조치방안 등
② 외부 대응	관계기관의 신속한 보고 및 신고 절차
5.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신고 및 조치 계획	
①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신고, 전파절차 등) 및 가동중지에 관한 절차 등	
② 응급조치계획(가동중지, 회수, 응급구조조치 등)	
6.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①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②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 계획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담당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며, 안전보건 담당자가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담함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담당자 및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공식적·공개적이어야 함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도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거나 알게 된 경우 해당 요인을 관련 사업자에게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음. 또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음(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됨(제30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에 따른 조치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신고 또는 조치요구 시, 안전보건 담당자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을 실시함. 만약 신고에 의한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도 조치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유해·위험요인이 심각한 경우, 안전보건 담당자는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해야 함

경영책임자등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함

[유해·위험요인 점검 결과 보고사항]

- 원료·제조물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 원료·제조물의 확인된 정보와 다른 새로운 정보

[징후발생과 대응] 안전보건 담당자가 위험징후 대응업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위험징후에 대한 대응인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업무가 공식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함

위험징후가 발생한 때에는 생산·제조·판매·유통되고 있는 원료·제조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긴급대응방안의 내용]

- 해당 원료·제조물의 종류
- 해당 원료·제조물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 판매 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해당 원료·제조물의 이용자 등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절차

위험징후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위 사항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이러한 역량은 아래에서 설명할 교육실시 및 점검·조치의무와 관련이 있음.
 업무담당자들의 역량강화는 주어진 교육의무의 성실한 수행에서 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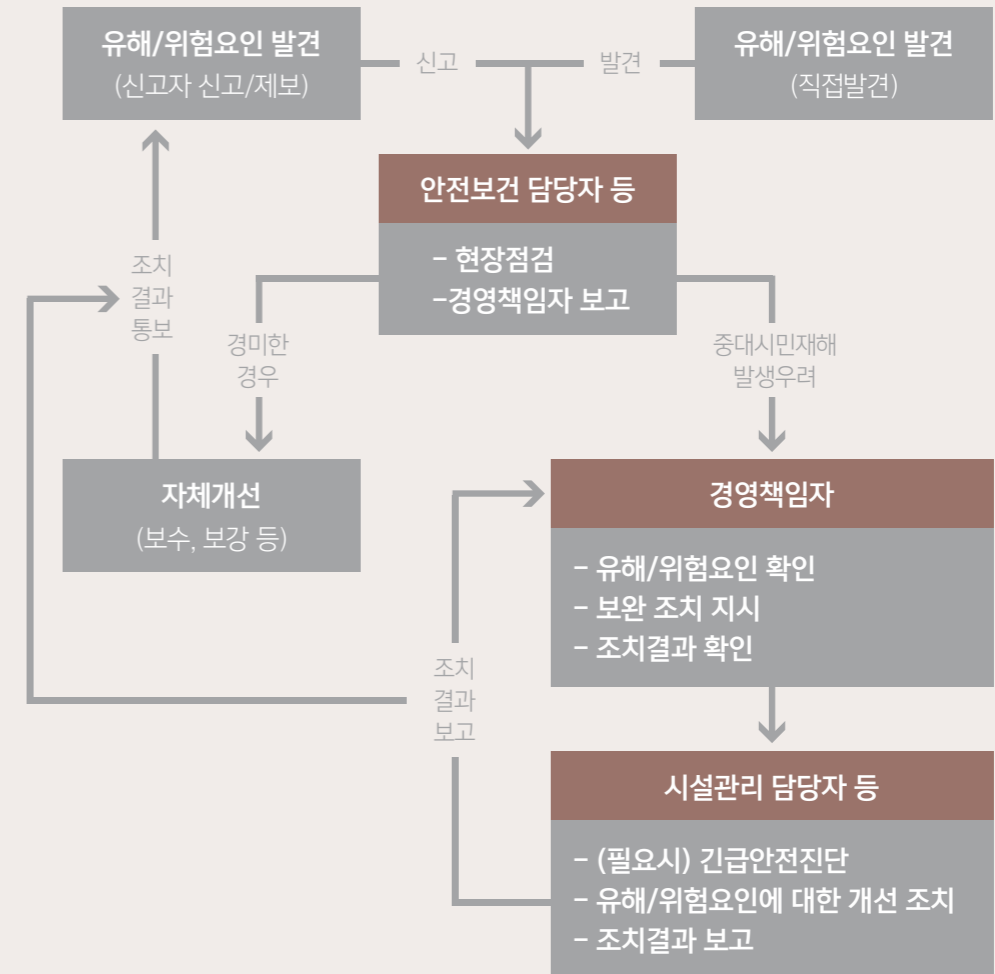
【제조·생산의 중지】 유해·위험 요인이 제거되지 않고, 안전·보건 확보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 생산·제조의 중지가 필요함

* 안전보건 담당자 등이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된 현장에 출동하여 생산·제조의
 중지를 명령하는 등의 절차

【가동중단】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하는 자는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와
 신고 외에도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함

【판매업자】 판매업자의 경우 위 조치에 추가하여 보관 진열된 원료·제조물
 등의 회수, 유통중단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징후 대응 절차 업무흐름도 표준(안) >



3)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보고·신고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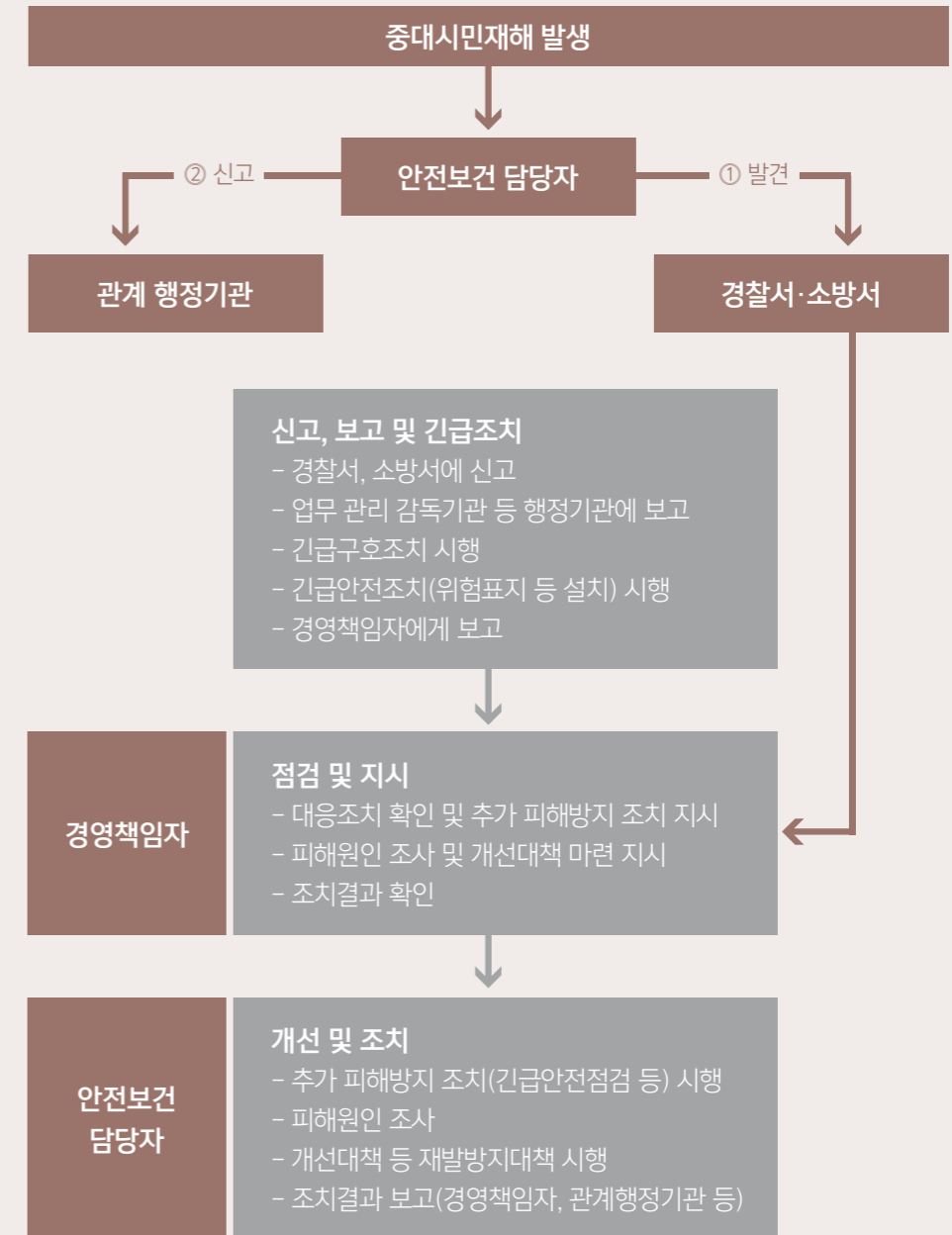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담당자는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며, 재해자에 대하여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조치 등을 시행해야 함. 또한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을 경영책임자들에게 보고해야 함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신고사항]

-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사고 피해 현황- 피해확산 현황, 현장 응급조치 현황, 대피 현황 등
-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경영책임자들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필요시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지시하며,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해야 함. 이에 따라 안전관리 담당자는 경영책임자들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경영책임자들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함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신고 및 보고체계 예시 >



05

Q&A

—

Q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이 포함되며, 유해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산·제조·판매·유통단계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이 있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됨

Q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법령상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 보다 넓은 것임. 나아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때 수급인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수급인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지만 수급인의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에 해당함

A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경영책임자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사람 →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의미함

※ 다만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③기업의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그러므로 공장장, 현장소장 등 개별 작업장 또는 사업장의 실무상 책임자 또는 대표자와는 구별되어야 함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하여 총괄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

※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Q 경영책임자등은 어떠한 기준으로 특정될 수 있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따라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

A 안전보건확보의무(제9조)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라는 표현은 양자택일의 선택적 의미가 아니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주체는 양자 모두이고 의무 불이행의 책임도 모두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임

A 경영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사안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의 행사나 그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것임

(1) 사업대표 및 총괄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공동대표이사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③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2) 하나의 법인이 복수의 사업부분을 가지고 사업부분마다 책임자가 다른 경우

-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3) 여러 개의 사업부분이 있으면서, 법인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사업 부문별 대표가 각 사업부문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그러나 여러 사업 부문들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내에서의 직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 등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Q 자동차, 먹는 샘물 등도 제작 상 결함이 있는 경우 중대시민 재해의 원인이 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볼 수 있을까요?

- A 자동차, 먹는 샘물 등은 그 속성에 인체유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 제조, 관리에 있어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다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원료·제조물에 해당함

Q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병원이 의료기기의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가요?

- A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의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주 등을 처벌함
최종 사용자인 병원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 이후의 과정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의 청구가 가능함

Q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A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념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다만 법령은 법령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유해·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법령은 모두 포함됨

Q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정될까요?

- A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의무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경우 보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별 법령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청하는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인력, 업무, 예산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보완조치를 취해야 함

Q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과 관련된 의무는 개별 법령상의 위험점검 및 대응의무와 다른 것인가요?

A 개별 안전·보건 법령에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지 않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그러한 점검과 대응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의 마련을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개별 법령의 사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함. 이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함

Q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 안전·보건법령 혹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동법 시행 전 구성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신규인력의 채용이 아닌 이미 채용된 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함. 다만 단순한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아님. 사업주는 해당 인력의 배치와 업무부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경우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부여를 수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업무부여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함

Q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의 점검은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위탁점검도 가능함.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점검에 해당함. 다만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

Q 개별 관계 법령에는 법정 의무 교육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A 그렇지 않음. 기존의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등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새로운 교육 실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를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조치할 의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임

A 사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이행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추가, 인력배치 등 의무이행에 충분하도록 사업환경을 개선할 의무를 부담함

Q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어떤 것인가요?

A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다음을 의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작업장 내 근로자 외의 사망 등】 다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의 사고라도 노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 (예) 제조공장에 방문한 견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Q 사업주나 법인이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작업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범위로 함. 그러나 법률에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를 정하고 있지는 않음

A 다만 유사한 개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도급인의 사업장’

-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위험장소)를 포함함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 전 사업주(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소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결국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Q 원료 및 제조물의 판매·유통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온라인판매중개업자 등도 적용대상이 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됨.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제조물이 적용대상이 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A (생산·제조) 생산·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원료로 만들어지는 제조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탁생산 과정도 포함됨

A (판매·유통)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이므로 수입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등이 모두 포함함

*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도 판매중개업자에 포함될 수 있음. 현재 다양한 법령에서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관계 법령의 상세는 “6.참고”)

Q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나요?

A 사업주 등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함(법 제9조 제1항)

*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발생하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될 수 있음

- Ⓐ 그렇다면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의 의미가 중요한데, 민사책임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조물책임법」상 이에 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도 존재함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가목」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 판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제조자에게 기대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변압변류기 폭발 사건”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연한이 기사용기간을 초과한다면, 내구연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책임법」은 “설계상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나목]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 판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판단함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담배소송 사건”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이른바 설계상의 결함이라 한다”

“국가 등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고엽제 사건”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甲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乙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乙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고엽제의 TCDD 에 노출되어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사례”

Q 중대시민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과 이행에 관한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가이드라인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밀한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

【협조의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원료·제조물 및 관련 용기 등의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되는 경우 이를 수행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함

(예) 「고압가스법」 제18조 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2. 유통 중인 용기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등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Q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조치계획과 결과보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행조치를 하면 됨

(예)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회수명령

환경부장관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가. 수입금지, 미승인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A 개별 관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과 결과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음

【조치계획서/조치결과보고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이와 같은 이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서 등을 마련하고, 이행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함

【조치계획서의 제출】 조치계획서 고려사항

- 해당 물질, 제품의 명칭, 제조량, 수입량, 판매량, 거래업체명 등
- 조치계획량(계획서 제출 당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조치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예상시간
- 조치명령 이행의 장소 및 구체적 이행방법
- 조치사실의 공표 방법

【조치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치결과보고서 고려사항

- 해당 물질, 제품(제조물)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Q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개별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요?

A 반드시 업무별로 인력을 구분하여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 외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1) 타 법령에 따른 기존 안전보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2) 그 외 자체적으로 인력 및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의 활용도 가능함. 더불어 아래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 업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적절한 인력배치와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함

A 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업장에 기존 안전·보건 인력과 조직을 두고 있던 경우 해당 인력과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조직이 관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

Q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의 관계】 개별 안전·보건 법령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도 확인·점검해야 함. 이러한 의무이행은 문서화*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음

* 문서화와 기록보관에 관해서는 이 가이드북 “04의 라”를 참고

[예] 살생물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중 인력기준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할 것
-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만약 사업과 관련된 개별 안전·보건 법령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기준이 없다고 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인력을 갖추어야 함. 그 이유는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임(유해·위험요인을 점검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가이드라인 “03.가”를 참고)

Q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과 관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일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위험점검 후 징후를 발견했을 때 대응조치 중 하나로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신고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건강기능식품법」제10조의2 제1항).

【참고2】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함 (「재난안전기본법」제19조제1항).

또한 판매중단, 가동중단 등의 명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제1항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발생우려 → 응급조치 → 취급시설 가동중단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 제7항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기능물질 또는 석면허용 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기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기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2조 제4항

원제취급자는 원제가 유출되어 사람의 건강 및 가축의 피해 또는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자체 방제계획에 의한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유관기관(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노동관서, 보건소·상수원 취수장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제취급자 : 생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발견한 위험징후가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징후 발생 시 대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상 규정을 참고하여 위험징후에 대응해야 함(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가이드북 “03.가”를 참고)

Q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A 【긴급조치의무】** 사업주 등은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생산·제조 사업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며, 판매·유통업자는 즉시 해당 원료·제조물의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이미 판매되거나 유통된 원료·제조물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A 【신고의무】** 사고발생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신고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신고사항】 - 생산, 제조, 판매, 유통업자

-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사고 피해현황
-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더불어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119)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함(「소방기본법」제19조)

- A 【협조의무】**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업자는 다음 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나 유관기관이 상황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협조사항】 - 생산, 제조, 판매, 유통업자

- 사고 원인 원료·제조물의 확산 현황
-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Q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이 어떠한 사항을 점검으로써 가능한지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 A** 인체에 유해한 주요 원료·제조물에 있어서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유해화학물질의 점검사항】 -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사용업 모두 해당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확인
- 공정안전정보, 안전장치 현황 확인
- 안전관리계획 점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점검사항】 - 생산·제조 및 수입업자

-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위해성 정보
- 살생물제품 제조, 보관시설,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농약 및 원제의 점검사항】

- (제조, 원제업, 수입업)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 (판매업)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의약, 식료품, 사료와 구별하여 진열, 판매하고 있는가?
-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 식료품 또는 사료 보관장소와 분리되어 있는가?
- 환풍, 차광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되어 있는가?
- 방독이 방수처리 되어 있는가?

Q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업무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A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 기본적으로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구성함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고려사항

-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계획 수립*, 점검범위 설정,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사업장 내·외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이어질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위험의 크기를 산정
-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내 허용가능한 위험성 크기를 비교하고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판단
- [대책수립 및 실행] 위험성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

* 점검계획의 수립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별표5]의 원료·제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수적이며, 기타의 경우 참고사항으로 활용 가능.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고려사항 (단순판매업자)

- [위험요인 점검] 진역, 보관 장소 점검, 제품표시 확인, 판매상품 정보수집 등
- [위험성 결정] 점검결과 또는 기타 사유로 위험성을 알게 된 경우, 허용될 수 있는 위험이지 여부를 확인(전문가 의견청취, 관계 기관 문의 등)
- [대책수립 및 실행] 위험성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

Q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해 업무상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A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누구나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장 관계자는 누구나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재해 재해의 우려가 있는 요소를 제보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에도 관련 업체 및 시민도 유해·위험요인을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어야 함

위와 같이 다양한 경로로 재해우려의 제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청취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함. 또는 이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안전·보건 담당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바탕으로 개선조치 등을 검토해야 함

사업주는 중대시민재해 및 기타 재해발생 현황 등을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조치 등을 수행해야 함

-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독성이 있는 물질이 유출된 경우들을 분석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의 자료로 활용해야 함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해야 함

- 유해·위험요인인 물질을 보다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위험요인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장소 및 지역에 작업자 및 주민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
- 유해·위험요인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완충지대를 조성하거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함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경우 이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함

- 주변 주민의 접근이 가능한 위험설비 및 기계 등을 파악함
- 생산·제조·보관 과정에서 독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취급상태 등을 파악하고, 대체가 가능한 경우 가급적 독성이 낮은 물질로 교체해야 함
- 제조물에 독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함

Q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에서 동일한 사고 및 원인의 어떤 의미이며, 치료기간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A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해당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2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당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3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06

참고



(관계 법령상 규정)

[참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구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함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시행규칙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
	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시행규칙 제16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제2항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시)
	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시행규칙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원자력안전법	법 제106조(교육훈련)
	시행령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시행규칙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시행규칙 [별표 5의2] 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 제6항 관련)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약사법	법 제15조(연수교육) : 약사 및 한약사
	시행규칙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법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시행규칙 제26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시행규칙 제27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법 제34조의4(임상실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38조의2 (임상시험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법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구분	내용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44조 (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법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47조의2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마약류관리법	법 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들의 교육)
	시행규칙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들의 교육)
화장품법	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시행규칙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농약관리법	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시행령 제21조(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등에 대한 교육)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고시)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고시)
비료관리법	관련 규정 없음
사료관리법	법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5항, 제6항
	시행규칙 제17조(교육훈련 등)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 제9조의2(교육훈련 등), 별표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22조(교육의 실시) 제1항 : 시행령 제26조(교육실시) : 교육대상자, 제4항 : 시행령 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
	법 제39조(자체안전교육) 시행규칙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교육)
	시행규칙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시행규칙 제19조(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계획 등)
의료기기법	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제23조(안전교육)
	시행규칙 제51조(안전교육) : [별표 31]
화학제품안전법	법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시행규칙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구분	내용
식품위생법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영업자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
	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5항
	시행규칙 제6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법 제56조(교육) : 조리사와 영양사 - 매2년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화학물질관리법	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 담당자,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광산안전법	법 제7조(안전교육) : 광업권자,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
	시행령 제8조(안전교육) :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시행규칙 제10조(안전교육) :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별표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 제17조(위생 교육)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법 제26조(교육명령)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시행규칙 (별표8)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규정 없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 제20조(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제5항, 제6항 : 승강기 안전관리자
	시행규칙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별표 10] : 내용 및 기간, 교육주기 : 3년
	승강기 안전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제7조(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등) [별표 1], [별표 2]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주기,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기간
	법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법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별표 13]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내용·방법·평가 및 주기

구분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법 제28조(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등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별표 24] : 안전교육의 과정·기관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해사안전법	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6항,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지하수법	법 제34조의2(교육 등)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 교육대상, 교육내용
수도법	법 제36조(교육)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먹는물관리법	법 제28조(품질관리교육)
	시행규칙 제17조(품질관리교육), 제18조(교육과정 등)
	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시행규칙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도시가스사업법	법 제30조(안전교육)
	시행규칙 제50조(안전교육) : [별지 14]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선박안전법	법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제6항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 제27조(교육대상자, 교육내용) : [별표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법 제41조(안전교육)
	시행규칙 제66조(안전교육) [별표 19] :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
전기안전관리법	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시행규칙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별표 11] :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2] :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시설물안전법	법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9항
	시행규칙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석면안전관리법	법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시행규칙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참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구분	인력	시설 및 장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시행령 별표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함 (시행령 제5조)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갖추어야 함 (법 제4조, 시행규칙 제8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자격·인원·점검장비 등은 시행규칙 별표 15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여는 자는 등록하여야하고 수입업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갖추어야 함 (법 제5조의3, 시행규칙 제8조)
		고압가스 운반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갖추어야 함 (법 제5조의4, 시행규칙 제8조)
농약관리법	제조업·수입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검사책임자, 판매관리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제조업·수입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실험실, 보관창고, 제조(포장) 시설 및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시행규칙 제6조)
마약류관리법	마약류 제조업자 등에게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의무를 규정 (법 제38조, 시행규칙 제40조)	마약류 등을 취급하는 자는 마약류를 견고한 저장장소를 갖추어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도록 저장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법 제1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법 제57조)	마약류제조업자 등에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별도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40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법 제57조)

구분	인력	시설 및 장비
비료관리법	-	시행령 제12조로 정하는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함(위험요인관리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됨)
화학제품 안전법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 지정,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 등을 규정 (시행규칙 제36조의2)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조·보관 시설 등을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함
식품위생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는 경우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규정 (법 제41조의2) 집단급식소 운영 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도록 하여 위생 및 안전 업무 수행 (법 제51조 및 제52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등을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집단급식소 운영 시,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의료기기법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품질책임자를 두어 의료기기의 제조업무에 총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조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1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시행규칙 제39조)	의료기기를 제조하려는 자, 수입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따라야 함 (시행규칙 제8조, 제31조) 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따라야 함(시행규칙 제35조) 판매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따라야 함 (시행규칙 제39조)
약사법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 (법 제20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령 제22조의2)

구분	인력	시설 및 장비
약사법	<p>의약품등 제조업자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만 제조하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외)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도록 함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제조 업무 관리) (법 제36조)</p> <p>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하도록 함 (법 제37조의3)</p> <p>*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 수입자의 경우에도 준용됨</p>	<p>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1조)</p> <p>의약품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영업소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법 제42조)</p> <p>* 의약품 제조업 및 수입업자의 시설기준은·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서 규정</p>
	<p>법 제53조의 2(방사선안전관리자)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개시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p> <p>시행령 제83조 허가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을 별표 3에서 규정*</p> <p>*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 기준을 규정</p>	<p>방사선동위원소 등 생산시설· 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법 제55조)*</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인력을 확보할 것</p> <p>시행령 제83조 허가기준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을 별표 2에서 규정*</p> <p>*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등에 따라 필요한 장비 기준을 규정</p>

구분	인력	시설 및 장비
원자력 안전법	<p>시행규칙 제62조의3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기준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규정*</p> <p>*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등에 따라 인력기준을 규정</p>	<p>별표 2 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p> <p>(생산)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시 장비 기준 (판매) 밀봉 또는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판매하는 경우, 방사선발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의 장비 기준 (사용) 밀봉 또는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의 장비 기준 (이동사용)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 사용하는 경우의 장비 기준</p>
화약류 단속법	<p>영화·연극 등을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 등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12조)</p> <p>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함 (법 제27조)</p>	<p>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 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6조 4항)</p> <p>시행령 제8조 제10조 각각 제조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규정 그리고 동 시행령 제10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규정</p> <p>*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판매업 시설기준을 준용</p> <p>* 보안거리(시행규칙 제8조), 격벽(시행규칙 제10조), 방폭구조(시행규칙 제11조)</p>

구분	인력	시설 및 장비
화약류 단속법	화약류를 200킬로미터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시행령 제50조)	시행령 제4장에 제29~40조 저장소 등의 위치·구조 설비에 관하여 규정 * 화약류저장소별에 다른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규정함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차량 1대로 1개 장소에 일일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로 하여금 경계요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50조)	시행령 제39조~제44조는 폭발 예방 등을 위한 피뢰장치 흠뚫, 간이흠뚫, 방폭벽 등을 규정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기술인력 기준을 규정 영업허가 시, 시행규칙 별표6(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 두어야 함* * 단,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종업원이 10명 미만) 시 적용되지 않음	취급(상차·하차 및 용기포장) 시,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별표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함 (시행규칙 별표6)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함* *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세차시설, 탈의시설, 개인보호장구 등 작업자 보호에 관련한 사항과 화재예방 누출, 사고 방지 등에 관한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 시행규칙 별표6(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참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요건 규정

구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선임)
	시행규칙 별표2 (안전보건책임자를두어야하는사업의종류및사업장의상시근로자)
	법 제16조(관리감독자)
	법 제17조(안전관리자)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선임등)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자격)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자격)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업무등)
	법 제18조(보건관리자)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선임등)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자격)
	시행령 별표6(보건관리자의자격)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업무등)
원자력안전법	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선임등)
	시행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
약사법	법 제53조의 2(방사선안전관리자)
	시행령 제83조 허가기준
	시행규칙 제62조의3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정의)
	법 제3조(약사자격과면허)
	법 제4조(한약사자격과면허)
	법 제36조(의약품등의제조관리자)
	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등록)
화장품법	법 제45조(의약품판매업의허가)
	법 제2조(정의)
	법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법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화장품법	법 제3조(영업의 등록)
	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의등록등)
	시행규칙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구분	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시설기준 등)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자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시행규칙 제8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제조업·원재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 : 인력, 시설, 장비 기준 시행규칙 별표1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신고기준)
비료관리법	관련규정 없음
사료관리법	법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시행규칙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자격과인원) 시행규칙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의직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4조(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판매업의허가)
	법 제9조(수출입업의허가)
	법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소지허가)
	법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및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선임)
	법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및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면허)
	법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시행령 제6조(총포의개조·수리업의허가신청서)
	시행령 별표15(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선임기준)
	시행령 별표16(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선임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 제5조(영업의 허가 등)
	법 제12조(품질관리인)
	시행령 제4조(품질관리인의자격기준)
	시행규칙 제15조(품질관리인의수)
의료기기법	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및 제15조(수입업허가 등)
	법제6조의2(품질책임자준수사항등) 및 제15조제6항(준용)
	시행규칙제11조(품질책임자자격등) 및 제34조(준용)
	시행규칙별표6(의료기기유통품질관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화학제품안전법	법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시행규칙 별표2
식품위생법	법 제51조(조리사)
	법 제52조(영양사)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대상)

구분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준수사항적용대상영업자의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5조(용기·냉동용기및특정설비의제조등록등)
	법 제5조의3(고압가스수입업자의등록)
	법 제5조의4(고압가스운반자의등록)
	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법 제15조(안전관리자)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종류및자격등)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업무)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의자격과선임인원) 시행규칙 별표15(안전관리규정의작성내용)
광산안전법	법 제2조(정의)
	법 제5조(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의의무)
	법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시행규칙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선임및자격)
	시행규칙 별표3(안전관리직원선임기준및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광산구호대의조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령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영업의 등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 제7조(보고와 검사 등)
	시행규칙 제5조(보고사항및검사사항등)
	시행규칙 별표4(보고,제출및검사항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 제2조(정의) 제5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시행령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시행령 별표5(위험물취급자격자의자격(제11조 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7(탱크시험자의기술능력·시설및장비(제14조제1항 관련))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책임자및안전관리자의자격기준및인원(제16조 관련)
	[별표4] 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제18조 제2항 관련)
	[별표4의2] 해사안전감독관의자격기준(제19조의3 제1항 관련)

구분	내용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등록 기준(제32조 제4항 관련)
	[별표6]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 제1항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의2] 저수조청소업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제2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8]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먹는물관리법	관련 규정 없음
	다만 제조업자들은 환경영향 조사 대행자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하며, 조사대행자의 기술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 [별표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제8조 제2항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선박안전법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게 함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시행규칙 제63조(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 요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시행규칙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자격)
	시행령 별표1(안전관리자의자격과선임인원)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 제1항 관련)
	시행령 [별표6]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 제3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6]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시행규칙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전기안전관리법	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시행규칙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시행규칙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시행규칙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시행규칙 [별표8]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례

구분	내용	비고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40조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안전인증 없는 경우 즉시 삭제, 중개의뢰자가 안전인증표시 입력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보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어린이제품법 제30조	안전인증 표시 없는 제품 판매금지	안전인증 없는 경우 즉시 삭제, 중개의뢰자가 안전인증표시 입력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보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전기 생활용품 안전법	제9조 제3항	안전인증표시 임의변경 및 제거 금지	
	제10조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안전인증 없는 경우 즉시 삭제, 중개의뢰자가 안전인증표시 입력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보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제29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18조 제4항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안전인증 없는 경우 즉시 삭제, 중개의뢰자가 안전인증표시 입력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보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제19조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제26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즉시 삭제, 중개의뢰자가 표시 입력을 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보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제40조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대상	
	제41조	보고의무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구분	업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법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법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0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등) 법 제12조(품질관리인) 법 제13조(교육) 법 제14조(기준 및 규격) 법 제15조의2(재평가) 법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법 제21조의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법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법 제22조의 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해당 조항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포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용기 수리 감독 업무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 업무
	안전관리규정 -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종합적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사항 포함
	안전관리자 -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 수행
광산안전법	광산안전기술기준 제정 및 준수 - 광산근로자 준수사항 - 관산안전관리직원 준수사항 - 통기 및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위해 발생 등의 신고
농약관리법	검사업무, 판매관리 업무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의 준수 의무 (제조·원제·수입) 검사책임자, 판매관리인 - 검사업무, 판매관리업무 (판매) 판매관리인 - 판매관리 업무

구분	업무
농약관리법	(수출입식물방제) 방제기술자 - 수출입식물검역과정 관리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 -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유지 및 확보
마약류관리법	(제조·수입)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업무
	(판매) 저장기준 관리 업무
	법 제2조(정의) 법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법 제15조(마약류의 지정) 법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법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들의 교육) 법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 해당 조항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포함
먹는물관리법	품질관리인 -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위생적관리
비료관리법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품질검사 의무
사료관리법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 제조종사자 지도 및 감독 - 위반사실 발견시 시정 요청, 보고의무(시도지사) - 원료, 제품 및 시설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관리 - 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 재해 원인 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 여부 확인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한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보건 관련 기술적 사항에 관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구분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 기계·기구 또는 설비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업무(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참여)
	(산업보건역) - 건강진단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건축물 석면관리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
	석면해제 작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선박안전법	선박검사 - 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등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 지정사업장의 승인요건 준수
	컨테이너 형식 승인 등 - (컨테이너 소유자) : 컨테이너 안전점검 등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등 - (선박소유자)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하역설비의 확인 등,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산적화물의 운송 등 - (화주) 선장에게 화물정보 제공 -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구분	업무
수도법	수도시설관리자 -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정수시설의 운영·관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법 제1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수입신고) 법 제22조(검사명령) 법 제23조(수입식품 등 유통이력 추적관리)
승강기안전관리법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 설치, 유지관리 시 법정기준 준수 의무, 이용자 피해방지노력 의무,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기술인력, 설비기준 준수)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 시 기술인력, 설비기준 준수 의무, 유지관리업 등록 시 기술인력 및 설비기준 준수 의무
	(사후관리 의무) 제조·수입업자의 유지관리 부품 제공, 점검 및 검사 장비 등 제공 등
	(안전인증 의무)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자의 안전인증 의무,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안전인증 의무
	(승강기 설치신고) 설치종료 시 설치공사사업자의 신고 의무
	(승강기 설치검사)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설치종료 후 검사 의무
	(승강기 자체점검)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및 결과 입력 의무 (월 1회 이상)
	(사고보고 및 조사 의무) 관리주체의 사고 또는 고장발생 시 통보 의무
시설물안전법	책임기술자 -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 - 참여기술자의 감독
	소속공무원 - 긴급안전점검
식품위생법	(제조) 위생관리 업무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업무

구분	업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 -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유지 및 확보
약사법	(제조) 제조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관리사항 준수 -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안전검사기관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 관리주체 - 유지관리의무 이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사업자의 보고의무) 안전기준 미준수, 중대사고 발생 등의 경우 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위해우려 시 자발적 수거 및 보고의무
	(자료제출의무) 산업부장관의 요청 시 자료제출 의무
	(안전인증 의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안전인증 의무
	(안전인증 표시의무) 안전인증 후 제조·수입업자의 표시의무
	(안전확인 신고의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의무
	(안전확인 표시의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안전기준 확인 표시의무
	(공급자적합성 확인 및 표시의무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적합성 확인 및 표시, 주의·경고 표시의무, 증명서류 비치의무
	(정보제공 의무) 산업부장관의 요청 시 안전 관련 정보제공 의무
원자력안전법	(허가기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건설허가 시 기술능력 확보 등
	(계량관리규정 승인의무)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의무
	(부적합사항 보고의무)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안전관련설비 허가기준 부적합사항 보고의무

구분	업무
원자력안전법	(검사의무) 발전용원자로설치자, 공급자 등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에 대한 검사의무
	(기록 및 비치의무)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건설 관련 사항 기록 및 비치의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의 안전관리 직무수행 -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
	탱크시험자 - 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점검
	위험물운반자 - 위험물의 운반 관리
	위험물운송자 - 위험물운송 준수사항 준수
의료기기법	(제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업무
	(수입) 시설과 수입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업무
	(판매) 유통품질 관리 업무
지하수법	(허가기준 등)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 지하수영향조사 의무 등
	(준공신고) 허가 및 신고자의 준공신고 의무
	(오염방지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관리자의 오염방지 조치 및 수질측정 결과 보고의무
	(정화계획 승인 등) 오염 지하수 정화 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의 정화기준 준수 및 정화계획 승인 의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 의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안전인증 의무
	(자체검사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의 안전인증 후 자체검사 의무
	(안전검사 의무)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수입업자의 안전검사 의무
	(안전인증 표시의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안전인증 후 표시의무
	(신고의무)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안전확인 후 신고의무

구분	업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 표시의무)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안전확인 신고 후 표시의무
	(적합성 확인의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적합성 확인의무
	(적합성 확인 표시의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의 적합성 확인 후 표시의무
	(안전기준 준수 의무) 안전기준대상생활용품의 제조·수입업자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안전기준 준수 표시의무) 안전기준대상생활용품의 제조· 수입업자의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 제조보안, 관리보안 업무
	(판매) 관리보안 업무
해사안전법	선박소유자 -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 수립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화장품법	법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 법 제9조(안전용기·포장 등)
화학물질관리법	물질 안전관리 업무
화학제품안전법	(제조) 인체, 환경 안전관리 업무
	(취급) 보관, 유지, 품질 관리 업무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